

제9절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 계약해제확인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 부존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6. 17. 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동업계약확인 청구

피고는 원, 피고간의 20〇〇. 〇. 〇.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동업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동업계약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원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확인, 가등기말소 및 무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박〇순, 이〇식, 이〇환, 이〇희, 이〇자, 이〇휘, 이〇완, 편〇례는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6. 10. 접수 제 1869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08. 4. 14. 접수 제 130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김〇수는 같은 등기소 2003. 8. 2. 접수 제 33328호로 2003. 5.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3. 29. 접수 제 884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3예비적 청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②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

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낙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
 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락인의 청구
 는 그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
 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경락인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아직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이 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
 자의 경매신청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공1999하, 2170)

❖ 비농지확인 청구(잡종지)

피고는 ○○도 ○○군 ○○면 ○○리 12 전 00㎡, 같은 리 13 전 00㎡, 같은 리 14
 전 00㎡가 비농지(잡종지)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비농지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어떤 토지가 비농지로 확정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현재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위 토지의 비농지인 여부의 확인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1.8.20. 선고
 81나697 판결)